

1. 개정안의 레미콘 물성시험 기준과 KS의 물성시험 빈도가 상이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시키기 전 KS규정부터 먼저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2. 단위수량시험에 대한 개정시 레미콘업체 와 현장에서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되는지 부터 검토 바랍니다.
 ⇒ 현행 건축현장 배합시 슬럼프 기준 및 레미콘 단가에 대한 이해부분등을 고려 바랍니다.
 현행 슬럼프 생산 150 ~ 170mm로 관리중이지만 점점 고층 및 다변화 되는 건축물의 특성상 슬럼프란 기준을 가지고 현장의 작업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3. 국토부에서 시행중인 건설현장 점검시 품질관리자 검직 여부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건지 품질관리자 검직으로 지적 받은 현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점검에 열을 내면서도 대부분의 건축현장 등이 품질관리자는 1인 또는 검직 과 함께 그 모든 서류를 해야 할까요? 점검만 실적 내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점검을 바랍니다.
 안전은 인명이 손상되니 강하게 하고 품질은 안걸리면 만사형통 걸려도 벌금 및 벌점으로 그치니 가볍게 보는게 현 실정이니 품질강화를 위한다면 인력 및 자원의 확보부터 최선이 되어 하지 않을까요?
4. 감리자의 감리업무지침 및 세부기준 변경 및 감리자의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 바랍니다.
 - 1) 건설현장에서 감리자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 2) 한 현장에 있는 감리원들의 관리기준이 왜 제각각 인지?
 품질전담 감리원은 형식상이고 각각의 감리원에게 따로 업무지시를 받고 확인을 받으며 입맛에 맞게 서류작성 해야 하는 실정.
 - 3) 도대체 어디까지 감리원의 경험에 의존해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대관 및 품질관리 6대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언제까지 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야 할까요?
 그에 따른 법정 서식 등(분기보고서, 품질관리대장, 균열대장 등) 어느 현장이던지 간에 전부 제각각 이더군요.
 - 4) 감리원은 나이와 정년에 상관없이 경력되고 교육완료하면 현장에서는 시공사에 서류 전담 시키고 현장에서 지적만 하면 되는건지?
 - 5) 왜 모든 점검은 위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지적사항이 시공사만의 탓인건지?

현재 안좋은 사건으로 실적관리식 점검과 행정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품질이 강화되고 사용자도 만족을 할수 있게 모든 건축물에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제도개선과 현장의 실제운용 및 상황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